



## 전시회 참가 규정

### 제1조 (용어 정리)

전시회라 함은 '서울패션소싱페어(영문: Seoul Fashion Sourcing Fair)'를 말하며, '전시자'라는 전시 참가 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. 주최자는 '패션인사이트'를 말한다.

### 제2조 (부스 위치 배정)

주최자는 업종, 계약금 납입순서, 참가규모, 과거 참가실적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.

### 제3조 (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)

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. 나머지 잔금은 2010년 3월 12일까지 주최자 지정계좌로 납부 하여야 한다.

### 제4조 (전시품 설치 및 철거)

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(보험, 보안 및 안전)

- 1)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며, 중요전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.
- 2)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영하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

### 제6조 (전시품 제한)

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
### 제7조 (참가신청 해지)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### 제8조 (사용 취소 및 위약금)

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아래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.

단,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.

- 2009년 2월 28일 이전 취소했을 경우 - 취소면적/신청면적 X 부스 참가비 X 30%
- 2009년 3월 1일~3월 30일 이전 취소했을 경우 - 취소면적/신청면적 X 부스 참가비 X 50%
- 2009년 4월 1일 이후 취소했을 경우 - 취소면적/신청면적 X 부스 참가비 X 100%

### 제9조 (전시회 변경)

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### 제10조 (보충규정)

- 1)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- 2)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제11조 (분쟁해결)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쟁쟁의 권리,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,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